

〈특 집〉

## 파리 소재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의 문제점

李相燦\*

### 머리말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국보나 보물 등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문화재를 가져간 나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해외로 문화재가 유출되는 사정이나 경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따라서 반환의 이유도 달라진다. 또한 문화재를 유출해 간 나라들이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출해 간 나라들을 설득하는 일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외규장각 자료가 1866년 프랑스 해군에 의해 약탈당한 이후로 1909년 伊藤博文에 의해 대규모로 문화재가 반출되었고, 식민지 시기 수없이 많은 문화재가 불법 반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sup> 1945년부터 한국전쟁 시기에도 미국과 러시아로 반출된 문화재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교류재단과 문화부의 조사에 의하면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7만 5천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sup>2)</sup>

이제 우리는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문화재를 반출한 나라들이 여전히 강대국이어서 실질적인 반환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된 국제법상의 여러 문제, 문화재 반출의 구체적인 경위, 유출된 문화재의 현재 소재지 추적 등을 정리하고 차근차근 풀어가면 전망이 어두운 것만도 아니다.<sup>3)</sup>

---

\* 서울대학교 人文大學 國史學科 助教授

1) 이태진,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의 피탈 경위와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현황” **외규장각 도서, 무엇이 문제인가**(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이상찬, “伊藤博文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 **韓國史論 48**(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2).

이규열, **한국문화재수난사**(돌베개, 1996).

2) 백충현, “약탈문화재의 반환은 국제법상 의무” **문화와 나**(삼성문화재단 2001년 1월).

지난 1991년 이후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한불 양국 사이에 반환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비록 반환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였고 현재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된 제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해외 유출 문화재의 반환 추진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하여 한불 양국 사이에서 진행된 협상 내용을 정리하고,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현재의 협상팀은 외규장각 자료를 들여오는 현실적인 방법은 맞교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0년 10월 이후 맞교환이나 무조건 반환이나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당시의 협상팀이 마련한 맞교환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이 검토되지는 않았다. 맞교환 방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맞교환 방안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 1. 1997년까지의 한불 정부간 협상 내용<sup>4)</sup>

1991년 10월 18일 서울대학교는 외무부 장관에게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규장각 도서 반환요청 의뢰”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의하면 “프랑스군이 당시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도서 340여 권과 지도 2점, 족자 7개, 대리석 판(옥책) 3개 등을 탈취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 면서 “위 탈취물 중 도서와 지도, 족자 등은 현재 규장각이 관리하고 있는 규장각 도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이것들을 반환받아 보존관리하여야 할

3) 1991년 외규장각 도서 반환 요청 이후 반환 협상이 전개되면서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최근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백충현, “약탈 外奎章閣 圖書 반환에 대한 國際法的 高찰” 외규장각 도서 무엇이 문제인가?(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2. 이보아,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민연, 2002).

3. 김형만,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4. 김형만, 문화재 반환과 국제법(삼우사, 2001).

5.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에 대한 고찰(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산업연구소, 1998).

6. 이강숙, 불법 유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한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에서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 국제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4) 이 부분은 백충현, 앞의 논문에 이미 정리되어 있다.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보충할 부분만 정리하기로 한다.

책무를 느끼어 그 반환협조요청을 의뢰”한다고 하였다.<sup>5)</sup>

서울대학교의 요청을 받은 외무부는 차관 명의로 프랑스 외무성에 해당 도서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측은 동 도서가 프랑스 공공재산임을 이유로 일방적 반환을 거부하였다.

1993년 9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 『徽慶園園所都監儀軌』 1책을 반환하면서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미테랑의 방한에 대비하여 한국과 프랑스 정부 사이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되었고, 그 방안은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

- 제1안. 서울대 규장각 소장내 규장각본과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본 상호 영구 임대 형식의 교환
- 제2안.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와 프랑스의 한국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국내 도서를 완전 교환 또는 영구임대 형식으로 교환.
- 제3안. 파리 국립도서관에 대해 한국학과 관련된 기금을 증여하면서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 임대 형식으로 환수.

3개의 방안을 검토한 백충현, 이태진 두 교수는 1993년 9월 3일 “제1안은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프랑스측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우리측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2안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고서가 아니라 간행된 규장각 자료라면 환영할 수 있으며, 제3안도 반환에 대한 호의와 그간의 유지 보존에 대한 보상을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검토의견을 문화체육부 국제교류과에 보냈다. 검토의견과 함께 “반환교섭 대상의 문화재는 일반적인 매매 또는 기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원한 국가 소유로 국가가 보관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 서지류’라는 점”을 협상의 기본 자세로 삼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당시 한국과 프랑스 정부 사이에 논의되고 있었던 세 가지 방안의 공통점은 반환의 형식이 ‘영구임대’라는 점이다. 다만 영구 임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상호 교환으로 하되 프랑스에서는 외규장각 도서를 제공하고, 한국측에서 제공하는 교환 대상으로 ① 규장각 소장본, ② 한국학 연구도서, ③ 한국학 기금 등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환에 의한 영구임대라고 하더라도 한국학 연구도서(원본 고도서가 아닌 영인본 등)나 한국학 기금과 파리 외규

5)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규장각 도서 반환요청 의뢰’(1991. 10. 18, 서울대학교).

장각 도서의 교환도 가능하였다.

며칠 후인 9월 14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한불 정상회담에서 “교류(change)의 방식으로 귀국에 영구 대여”한다고 하여 위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주었고, 그 다음날 『徽慶園園所都監儀軌』 상권 1책을 ‘반환’하였다.<sup>6)</sup>

그런데 교류에 의한 영구 대여라는 미테랑의 이 말에 대해 “반환(retur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서부터 등가등량의 맞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왔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억지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1993년 9월 “파리 소재 어람용 의궤 1권이 반환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는 교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3년 9월 미테랑이 가져온 의궤 1책이 만약 『교환에 의한 영구임대』라고 한다면, 또한 규장각 소장본과 교환하려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교환」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규장각 소장본 중 어떤 자료와 교환할지에 대해서도 명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교환에 관한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프랑스측은 미테랑의 임기 중에도, 또 미테랑 이후 지금까지도 ‘반환’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교환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미테랑 대통령이 파리 소재 외규장각 도서를 무조건 반환 방식에 의해 반환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교류 방식에 의한 영구 임대가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반환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테랑이 “반환”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이제 더이상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또 규장각본 고도서와의 교환을 의미한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

미테랑 대통령은 왜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

“한국이 외규장각 도서문체에 관해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의 어느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문서가 강제로 타국에 옮겨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도 이 고문서를 교류(change)의 방식으로 귀국에 영구 대여코자

6) 徽慶園園所都監儀軌는 현재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원래의 비단 표지가 아니고, 뒷표지의 국화동이 뒤집혀 있다. 개장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된다. 徽慶園園所都監儀軌는 상, 하 2책인데 미테랑은 상권 1책만 가져왔다. 간단하지만 상하 2책이 1질이라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며 이에 관해 우리 대사관이 귀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우선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중 우호의 징표로 고문서 중 1-2권을 각하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런 행동은 일찍이 해본 일이 없는 그야말로 한국에서 처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서를 거의 군사적 방법으로 가져 갔지만 본인은 이를 다시 문화부장관으로부터 거의 무력적 방법으로 재차 탈취해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sup>7)</sup>  
(밑줄과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은 필자)

“강제로 타국에 옮겨진 것이 사실 ... 거의 군사적 방법으로 가져갔지만”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테랑은 파리 소재 외규장각 도서를 전시에 약탈해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전시 문화재 약탈」이 국제법적으로 범죄행위로서 전시 약탈 문화재는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미테랑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1책의 의뢰를 무조건 반환”한 것이었다. 나머지 외규장각 도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환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미테랑이 의뢰 1책을 무조건 반환한 이후 프랑스와 우리측은 나머지 도서를 반환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영구임대라는 반환 형식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반환을 위한 실무교섭과정에서 외규장각 도서는 영구임대 형식으로 환수하고 반환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의 귀중도서를 프랑스에서 전시하는 방안이 우리측에서 검토되었다. 이후 우리측은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양국간 문화협력 차원에서 양국 문화재의 교환전시에 관한 협상을 제의하였다.<sup>8)</sup>

한편 프랑스측은 1993년 12월 “FRANCE 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간 도서 상호기탁에 관한 협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협정안은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도서 기탁에 관한 협정으로 고도의 속임수가 숨어있었다. 첫째, 협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기탁 도서에 외규장각 도서를 포함시킬 경우 한국은 프랑스에 대해 등가의 도서를 제공하라는 것, 둘째 외규장각 도서가 한국측에 반환되어도 프랑스측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협정안을 분석한 백충현 교수는 “외규장각 도서의 불법 유출 — 불법소유

7) “두루뭉수리 증후군” **중앙일보** 2000년 8월 4일 권영민 칼럼에서 재인용.

8) **외규장각 도서, 무엇이 문제인가?** 29쪽 참조.

의 행위자인 프랑스의 권리를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여 프랑스 초안을 수락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sup>9)</sup> 이에 따라 한국과 프랑스 정부 사이의 협상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없었다.

간헐적인 외교 접촉을 통해 의뢰가 아닌 고도서, 고도서가 아닌 다른 문화재 등의 교환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프랑스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프랑스측은 1993년 12월의 ‘협정안’ 이후 규장각 소장본과의 교환 원칙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등가등량의 교환원칙이었다.

정체 상태에 있던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은 1996년 6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외무부가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복본 의뢰와 외규장각 도서의 상호 대여’ 방안을 추진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 규장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적절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sup>10)</sup>

“첫째,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조건 없이 반환되어야 한다. 조건 없는 반환과 동시에 1866년 당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둘째, 규장각 또는 장서각 소장 의뢰는 프랑스가 약탈해간 도서와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도서로서 규장각 또는 장서각 소장 위례를 프랑스측에 기탁할 경우 그것은 프랑스가 1866년 약탈해간 도서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측의 약탈 도서 296책과 같은 분량의 의뢰를 기탁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同數의 의뢰 기탁의 경우에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규장각 또는 장서각 소장 의뢰 중에서 한, 두 책 상징적으로 기탁할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간 후 100년이 넘게 도서를 보존,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약탈해간 도서는 그동안 연구에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규장각 또는 장서각 소장 의뢰의 기탁을 요구하는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자료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한국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규장각 측의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외무부는 규장각본 복본 의뢰의 교환을

9) 백충현, “한국-프랑스간 귀중도서 교환협정(안)에 대한 분석의견”(1994년 3월 13일).

10) 1996년 6월 20일자 교육부 공문(교육부 대학 81510-19)과 이에 대해 규장각이 7월 2일에 제출한 공문(규장 81510-2) 참조.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1996년 10월 규장각은 대책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외무부에 협상 중단을 요청하였다. 이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다.<sup>11)</sup>

첫째,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의 대상이지 대가를 주고 교환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규장각 소장 복본 고도서와의 교환은 프랑스측의 현재 소유 상태를 추인하는 것이고 우리 문화재끼리의 교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1866년 외규장각 소장 의궤류 6천여 책에 대한 방화, 350여 책의 무단 반출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1993년 미테랑의 반환 약속에 따라 반환된 1책을 제외한 나머지 296책 전량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영구임대 방식에 의해 우선적으로 반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프랑스의 한국학 지원, 규장각 소장 자료를 영인 간행한 한국학 자료의 기증 등 문화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한 프랑스측은 교환 대상 목록에 “고도서 외에 지도, 동전, 그림, 족자, 메달, 악보 등 뿐만 아니라 제 3국의 고도서 또는 물품(일본, 중국 등)도 포함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후퇴하였다.<sup>12)</sup>

규장각 소장 복본 의궤와의 교환을 고집하던 프랑스가 교환 대상을 국내의 다른 고도서로 바꾸고, 다시 다른 문화재로 바꾼 것은 상당한 양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규장각 도서에 대해 여전히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프랑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규장각은 이번에도 이전과 똑같은 입장에서 프랑스측의 제안을 거절하였다.<sup>13)</sup>

이후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한 한불 정부간 협상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11) 뒤에 첨부한 ‘참고 자료 1.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한 의견서 제출’ 참조.

12) 교육부 학술 81510-17(1997. 3. 19).

13) 1997년 3월 26일 규장각이 통보한 세 항목 중 두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조건 없이 반환되어야 한다. 프랑스측은 조건 없는 반환과 동시에 1866년 당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는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소유로서 우리 소유의 도서를 찾아오는 데 그에 상응하는 고도서나 물품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을 주고 우리의 것을 찾아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영구임대에 의한 반환에는 합의에 이르러 있었고 다만 교환의 대상에 대한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교환(교류)의 대상으로 ① 규장각 소장 의뢰, ② 의뢰가 아닌 고도서, ③ 고도서가 아닌 다른 문화재 등 세 가지를 고려하였고, 우리측은 ① 고도서가 아닌 한국학 연구 도서(규장각 소장 자료 영인 간행본), ② 한국학 기금 등 프랑스의 한국학 연구 지원, ③ 문화재의 교환 전시 등 문화 교류 및 협력 등을 생각하였다.

## 2. 민간 협상 대표에 의한 협상 내용

### (1) 문화, 역사 분야 권위자간 해결방식으로서의 전환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한 1997년까지의 협상은 반환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성과도 없지 않았다. 첫째, 반환의 형식으로 영구임대의 방식에 합의하였다. 둘째, 교환 대상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고도서가 아닌 다른 문화재, 제3국의 문화재와의 교환도 가능하다는 데까지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류에 의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으려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를 협상당사자들조차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데서 반환 협상이 제대로 진전될 수 없었다.

고도서가 아닌 다른 문화재, 제3국의 문화재와의 교환도 가능하다는 프랑스의 제의에 대해 규장각은 프랑스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후 반환 협상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1998년 4월 아셈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시락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반환 협상이 재개될 수 있었다. 이때 시락 프랑스 대통령은 양국의 문화, 역사 분야 권위자간 해결 방식을 제안하였고, 자끄 살루와를 협상대표로 임명하였음을 1999년 1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친서로 통보하였다.<sup>14)</sup>

14) ‘외규장각 도서문제 관련 문화 역사 권위자 추천 의뢰’(교육부 학술 81500-72, 1999년 2월 1일). 외교통상부 서구 86000-36(1999.1.22)의 관련 공문.

위 공문에 의하면 Jacques Sallois는 1941년생으로 파리대학,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회계감사원 감사관, 1981-4년 문화장관 비서실장, 1987년 회계감사원 수석 감사위원, 1989-93년 프랑스 박물관 협회 회장, 1990-4년 프랑스 박물관장을 역임하였다. 1997년부터 협상대표로 임명될 때까지 회계감사원 최고심의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프랑스는 자끄 살루와를 선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프랑스 외무부는 학계 및 문화부 측과 8개월 여에 걸쳐 협의한 끝에 문화적 식견, 학계의 신망, 전향적인 역사 인식, 프랑스 내부적인 법적 장애를 우회할 수 있는 법률적 전문성과 현 동거정부내 좌우 정파를 공히 수용 가능한 경력을 보유한 Jacques Sallois를 추천, 수상실, 대통령실의 재가를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과거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이 지연되어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프랑스 측 내부적으로 철저한 등가원칙에 의한 교환 입장만을 고수해온 서지학자, 큐레이터 등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을 인식, 학문적, 문화재적 가치에만 집착하는 전문가들의 국수주의적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인사 선정을 추진”한 결과라고도 하였다.

결으로 보면 “정치적, 외교적 감각과 국제적인 식견을 가진 인사”를 선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sup>15)</sup> 그러나 한국측에서도 학문적, 문화재적 가치에 집착하고 국수주의적으로 반대하는 서지학자, 큐레이터 등의 전문가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에서 학술, 문화재 전문가를 배제하고 정치적, 외교적, 국제주의(국수주의가 아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때 프랑스측은 1999년 말 이전에 양측 권위자간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2000년 10월 시락 대통령의 공식 방한 시 최종 타결하겠다는 입장을 상정하고 있었다.<sup>16)</sup>

프랑스측의 이러한 제안에 따라 한국측은 한상진을 협상대표로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서울대학교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하여금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식견을 갖추고, 협상 결과에 따른 대국민 이해를 확보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인사를 2-3명 정도 추천”하도록 하였지만, 서울대학교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 한상진 씨를 협상대표로 임명하였다.

## (2) <외규장각도서 문제>에 관한 韓佛 정상회담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

자끄 살루와와 3차례의 회의를 가진 한상진 대표는 2000년 10월 19일 “<외규장각도서 문제>에 관한 韓佛 정상회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sup>17)</sup> 아셈 회의에

15) 앞의 공문.

16) 앞의 공문.

17) 이 보도자료는 양국 정상간 합의서 또는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서 등의 형식을 띠지

참석한 시락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보도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에 있는 어람용 유일본 64책을 먼저 2001년 안에 국내로 돌아오게 하되, 국내에 여러 권의 복본이 존재하는, 같은 시기(1630-1856)에 나온 비어람용 의궤 228책을 교류의 대상으로 한다.

둘째, 유일본은 아니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어람용 의궤들(233책)도 국내에 있는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궤와 2001년 말까지 맞교류한다.

한상진 대표는 이번 합의의 핵심이 프랑스가 그동안 교류대상에서 제외해 온 어람용 유일본을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유일본 교환을 먼저 완결하겠다고 하였다.

한상진 대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규장각 또는 장서각 소장본 의궤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내 의궤 소장처는 규장각과 장서각 이외에는 없다.<sup>18)</sup> 실제로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의궤와의 교환에 합의한 것이다. 보도자료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규장각 소장 의궤와의 교환을 주장해 온 프랑스측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내용은 1993년 12월 프랑스측이 제시했던 “FRANCE 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간 도서 상호기탁에 관한 협정(안)”이 목표로 했던 “등가등량의 교환” 원칙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협정안은 등가의 도서를 상호기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므로 프랑스가 파리 외규장각 도서를 기탁할 경우 한국측은 그와 유사한 질의 도서를 제공해야 한다.

1997년 3월 프랑스측은 고도서가 아닌 다른 문화재, 제 3국의 문화재와의 교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후퇴하였다. 그런데 한상진 대표는 이전의 이러한 협상 성과를 백지 상태로 되돌리고 있었다. 규장각 소장 의궤와의 교환에서, 한국 내 다른 고도서와의 교환으로, 다시 다른 문화재와의 교환으로 교류의 대상을 변

---

않은 점에서 우선 주목된다. 양국 협상 대표의 합의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과 시락 대통령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또는 ‘공동성명서’ 형식으로, 양측에 의해 동시에 발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한국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는 사실로만 볼 때 보도자료의 내용이 프랑스측과 합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4차 협상 공동합의문에 10월 19일자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더더욱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내용은 뒤에 첨부한 ‘참고자료 2’ 참조.

18) 현재의 규장각과 장서각이 1910년 이전에는 규장각이라는 하나의 기구였음을 생각하면 결국 구 규장각 소장 의궤와 교환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화시켜 왔던 프랑스가 한상진 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애초에 자신들이 주장하던 “규장각 의궤와의 교환”을 관철시킨 것이다. 유일본 의궤의 환수가 커다란 성과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국측이 1997년 3월보다 더 얻어내기는커녕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데까지 후퇴했다. 프랑스는 더 얻어낼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얻어냈다고 할 수 있다.

### (3) 〈외규장각도서 문제〉에 관한 韓佛 정상회담 보도자료의 문제점

#### 1) 어람용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한상진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어람용》 의궤는 서체, 그림, 종이의 질, 장정(裝幀) 등에 있어 《비어람용》 의궤보다 월등히 가치가 높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어람용이 비어람용보다 월등히 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종이의 질이 좋고 글씨, 장정, 표지 등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람용이 갖지 못한 요소를 비어람용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종이 매 장마다 ‘粘連印’이 찍혀 있고, 4-9부를 만들 때 그림을 매번 다시 그리지 않기 위해서 인쇄를 하였다. 어람용은 예를 들어 상, 하 2책으로 만들었다면 비어람용은 상, 하 합하여 1책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어람용과 비어람용이 내용은 똑같은데도 책장 분량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종이 매 장마다 점련인을 찍은 것은 책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 갈아 끼우거나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비어람용이 ‘보존’을 목표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훗날 의궤의 내용을 확인하려 할 때 어람용보다는 비어람용에 의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어람용과 비어람용은 서지학적으로 볼 때 전혀 별개의 책이고, 각각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어람용이 월등히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어람용은 어람용대로 가치가 있고, 비어람용은 비어람용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 2) 유일본과 비유일본 구분의 문제점

한상진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파리 소재 어람용 의궤를 유일본과 비유일본으로 나누고 있다. 즉 세계에 한 권밖에 없는 의궤를 유일본으로, 국내에 복본이 있는 의궤를 비유일본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분은 간행된 책에는 해당될 수 있다. 수백, 수천 권의 책을 간행하였는데 단 한 권밖에 남지 않았다면 유일본으로서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궤는 간행된 책이 아니다. 정부 문서철로서 문서철에는 유일본, 비유일본의 구

분을 적용할 수 없다. 문서철은 원본과 사본의 구분, 원본은 다시 정본과 부분의 구분이 더 적당하다. 어람용 의궤는 애초부터 1부만 만들고, 비어람용은 4-10부 정도를 만드는데, 이들은 모두 원본 문서철이다. 비어람용이 있다고 해서 유일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어람용 의궤에 대해 구태여 유일본 개념을 적용한다면 「어람용으로는 모두가 유일본」이다. 어람용 의궤는 대개 1부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모른 채 한상진 대표는 “같은 이름의 비어람용 의궤가 국내에 없는 경우”를 유일본, “같은 이름의 비어람용 의궤가 있는 경우”를 비유일본으로 보았던 것이다. 서지학적으로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어람용과 비어람용 의궤를 한 데 묶어서 유일본과 비유일본으로 구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어람용 의궤에 유일본, 비유일본 개념을 적용하려 한다면, 어람용 의궤를 원래 여러 책 만들었다는 전제 아래 한 부만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에 “복본(複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복사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비어람용 의궤는 모두 원본으로, 복사본을 연상시키는 복본이라는 표현보다는 “2질 이상”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적당하다. 복본은 부분(副本)의 의미도 있다. 이 경우 어람용이 정본이고, 비어람용이 부분이라고 볼 가능성이 큰데, 어람용을 정본, 비어람용을 부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한상진 대표는 ‘간행된 도서’와 ‘정부 문서철’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 가치가 높은 유일본을 복본이 여럿 있는 비유일본과 교환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간행 도서’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간행된 도서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정부 문서철은 ‘생산국의 영원한 소유’로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 유일본이건 비유일본이건, 파리 소재 어람용 의궤는 우리가 프랑스측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적이 없는, 영원한 우리의 소유이다. 따라서 유일본, 비유일본을 구분하기 전에 소유권이 한불 양국 어디에 있는지, 소유권을 양도한 적이 있는지 등에 먼저 주목했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람용 유일본 64책, 비유일본 233책이라는 통계조차도 정확하지를 않다. 이를 좀더 주의를 기울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리 소재 297책은 의궤가 294책(어람용 의궤가 289책이고, 비어람용 5책)이고 비의궤가 3책이다.<sup>19)</sup> 어람용 의궤 289책 중 비어람용이 없는 경우(유일본)가 27책이고, 비어람용이 있

19) 비어람용 의궤와 의궤가 아닌 자료의 목록은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 연구(외교통상부, 2003년 4월 15일) 31-2쪽 참조.

는 경우(비유일본)가 262책이다.<sup>20)</sup> 따라서 한상진 대표가 어람용과 비어람용, 유일본과 비유일본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려 했다면 297책은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야 각각에 대한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① 비어람용이 없는 어람용 의궤 : 27책
- ② 비어람용이 있는 어람용 의궤 : 262책
- ③ 비어람용 의궤 : 5책
- ④ 비의궤 : 3책

한상진 대표는 비어람용이 있는 어람용 의궤 262책 중 비어람용 의궤가 국내에 한 권밖에 없는 경우가 확인되면 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 한 권밖에 없는 비어람용 의궤는 76책이다.<sup>21)</sup> 따라서 297책 중에서 교류 원칙이 잠정적으로나마 정해진 것은 비어람용이 없는 의궤 27책과 비어람용이 2권 이상 있는 어람용 의궤 186책으로 이들이 2001년말까지 교류를 마칠 것이라는 것이다. 1권밖에 없는 의궤 76책, 비어람용 의궤 5책, 비의궤 3책의 교류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84책은 언제 어떤 것과 교류되는가?

### 3) 유일본 교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한상진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파리 소재 어람용 의궤 297책 중 유일본 64책을 “국내에는 여러 권의 복본이 존재하는, 같은 시기(1630-1856)에 나온 《비어람용》 의궤들”과 교류한다고 하였고, “우리측 연구 결과로는 교류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의궤는 228책”이라고 하였다.

“복본이 존재하는, 같은 시기에 나온 비어람용 의궤” 이 두 조건만 가지고 우

20) 파리 현지 실사팀은 “프랑스에 있는 유일본 의궤 및 등록”을 30책이라고 하였다(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연구 30-31쪽 참조). 그런데 이 30책에는 어람용 비유일본 2책(莊烈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莊烈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과 비어람용 2책(豊都監儀軌, 恭惠王后順陵修改都監儀軌)이 포함되어 있다. 莊烈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와 莊烈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는 비어람용이 파리 국립도서관에 합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므로 유일본이 아니다. 또한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上, 下 2책 중 下책이 비유일본으로 분류되어 있다. 파리 소재 하책이 341장인데 비해 규장각 소장본은 94장으로 되어 있는 파본이다. 따라서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下 1책도 유일본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비어람용이 없는 어람용 의궤”는 27책이 된다.

21)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연구, 조선조의 의궤(박병선, 1985), 규장각 소장 의궤 종합목록(규장각, 2002),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의궤 목록(규장각, 2003)을 조사하여 통계를 낸 것임. 상하 합본이나 파본의 처리 결과에 따라 책수는 유동적이거나, 규장각에 60책, 장서각에 16책이 확인된다(한국측 소장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59책, 14책).

리측에서 내어줄 교류 대상이 결정될 수 있을까? 교류 대상 228책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228책의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교환이라고 한다면 제목은 같지 않더라도 같은 종류(예를 들면 國葬에 관한 의례는 國葬에 관한 의례끼리, 嘉禮에 관한 의례는 가례에 관한 의례끼리)의 의례로서 분량이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교환 대상의 범위를 좁혀가지 않는다면, “복본이 존재하는, 같은 시기에 나온 비어람용 의례” 이 두 조건만 가지고는 우리측에서 내어줄 의례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내용으로 프랑스와 협상하게 된다면 우리측에서 내줘야 할 의례의 결정권을 프랑스측이 행사하게 될 것이다. 유일본 교류에 합의하였다는 이 내용은 결국 협상의 진전도 아니고, 우리가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는 결과를 남기고 있다. 원칙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류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류의 실행 방안을 아무리 해도 마련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 4) 비유일본 교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10월 19일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비유일본 233책(262책이 정확하다)은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례와 교환”한다고 하였다. ‘같은 제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리에 있는 비유일본 262책과 교환될 같은 제목의 의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마도 비어람용은 2권 이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한 듯한데,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은 비어람용 의례가 76책이나 된다.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례와 교환”한다면 프랑스로부터 어람용 76책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에서는 한 책만 남아 있는 비어람용 73책이 프랑스로 가야 한다. 어람용과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한 권밖에 남지 않은 비어람용 73책이 한국에서 영영 사라지게 된다. 유괴된 아이를 찾아오는 대신 다른 아이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 교류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어람용 유일본이 교환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자 한상진 대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어람용》 의례의 경우, 국내에 복권 이상이 존재하는 비어람용 의례와 교환한다”고 하면서 비어람용 유일본이 프랑스로 가게 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sup>22)</sup>

22) ‘<외규장각 협상> 교환도서 41종 국내 유일본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3차 보도자료,

10월 19일의 보도자료에는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뢰”와 교환한다고만 되어 있지, 복권 이상이 있는 비어람용 의뢰와 교환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비어람용 73책이 프랑스로 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한상진 대표가 발표한 10월 19일자 보도자료의 내용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서 발표된 합의 내용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뿐이다. 자신이 발표한 내용에 따를 경우 비어람용 유일본이 교환되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불을 끄기 위해 “복권 이상이 있는 비어람용 의뢰와 교환”한다고 서둘러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불과 보름 남짓 사이에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면 도저히 국가간 합의라고 볼 수 없다.

2000년 국정감사에서 김원웅 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때 한상진 대표는 “국내에 복본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동 41종 도서는 추후 불측과 교류대상 의뢰에서 당연히 제외”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sup>23)</sup> 한상진 대표는 10월 19일자 보도자료에서 분명히 2001년 말까지 비어람용 의뢰의 교환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교환대상 비어람용 의뢰가 유일본으로 판명될 경우 교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면, 2001년말까지 교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또한 2책 중 한 책이 파리에 유일본으로 남아 있고, 한국에 있는 비어람용은 2책이 한 책으로 합본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한 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도자료부터 발표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프랑스와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린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4) 4차 협상과 파리 국립도서관 현지 실사

10월 19일자 보도자료로 발표한 양국의 합의 내용은 의뢰끼리의 맞교환으로 여겨졌고, 도둑질해 간 우리의 물건을 찾아오는데 다시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더구나 맞교환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97책 중 84책의 교환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유일본 교류에서 유일본의 책수를 잘못 파악하였고, 우리가 내어줄 대상도서조차

2000. 11.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비서실).

23) “양국 협상대표 합의에 의하면, 우리측은 불측 소장 의뢰와 교류할 우리측 소장 의뢰로 국내에 반드시 2권 이상의 복본이 있는 의뢰 중에서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규장각 이상찬 연구관의 연구결과와 같이 41종이 국내에 복본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동 41종 도서는 추후 불측과 교류대상 의뢰에서 당연히 제외될 것입니다.”

결정되지 않았다. 실현될 수 없는 문제점투성이의 방안이었다.

2000년 11월 3일 역사학계와 국제법학계의 여러 학회들이 “외규장각도서 맞교환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sup>24)</sup>

2000년 11월 6일 파리에서 제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맞교환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맞교환 방안 자체의 심각한 문제점까지 노출되자 11월 6일로 예정되었던 4차 협상을 일단 중단하였다가 2001년 7월 파리에서 재개하였다.

4차 협상 합의문은 2000년 10월 19일자 보도자료와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sup>25)</sup> 유일본 교류에 관한 내용은 10월 19일자 내용 그대로이고, 대여 대상 도서 목록을 제시한 후 상대방에 의한 현지 실사를하기로 합의하였다.<sup>26)</sup> 비어람용 의뢰의 교류 문제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합의에 따라 자끄 살루와 프랑스 대표가 2001 7월 13일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 297권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였고, 이들 의뢰에 대해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1차 실사가, 2002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2차 실사가 이루어졌다.<sup>27)</sup> 외규장각 자료 297책에 대한 현지 실사가 이루어져 자료의 상태를 우리측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였다.

하지만 목록 제공과 현지 실사의 목표가 297책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1866년 프랑스가 약탈해간 ‘도서 340여권과 지도 2점, 족자 7개, 대리석판(옥책) 3개’라고 하였기 때문에 297책을 제외한 고도서 43책과 지도, 족자, 옥책의 소장처를 확인하고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파리 국립도서관

- 
- 24) 참고자료 3, ‘외규장각도서 맞교환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며’(2000년 11월 3일) 참조.  
2000년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세실 레스토랑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참석한 언론 기관은 연합뉴스, 경향신문, 조선일보, 대한매일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KBS 등이었다.
- 25) 참고자료 4, ‘한상진, 자끄 살루아 협상대표 공동합의문’(2001년 7월 25일 파리) 참조.
- 26) 현지 조사 문제는 반환 요청을 의뢰한 이태진 교수가 줄곧 주장한 것이다.  
이태진,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의 피탈 경위와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현황” **외규장각 도서, 무엇이 문제인가?** 15쪽 참조.  
이태진,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의 피탈 경위와 도서의 현황”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에 관한 고찰** 35, 37쪽 참조.
- 27) 실사 결과 보고는 **파리국립도서관소장 외규장각 의뢰 조사연구**(외교통상부, 2003년 4월 15일)로 간행되었다. 실사단의 구성과 일정, 현지에서의 실사 내용 등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중국본 자료 중에 혹시라도 외규장각 자료가 섞여있지는 않은지도 조사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약탈 도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sup>28)</sup>

### 3.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쟁점들

#### (1) 정부 문서

파리 소재 의궤는 조선 시대 왕실의 행사가 있을 때 훗날 참고하기 위해 행사의 전체 내용을 기록해 둔 문서철로서 편찬 간행된 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간행되는 책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게 할 목적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간행량이 많고, 돈으로 구입하거나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에 비해서 문서철은 보급의 필요성이 책보다는 훨씬 적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쇄 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만들어지는 분량도 적다. 많아 봐야 몇 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선 시대의 의궤는 보통 붓글씨로 써서 5-9부 정도 만들었는데, 이 모두는 원본이다.

정부 문서는 생산국의 영원한 소유가 원칙이라고 한다. 정부 문서가 생산국의 영원한 소유라고 한다면, 대등한 문서나 같은 종류의 문서와 교환한다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프랑스가 1866년에 가져간 조선 시대 문서철은 왕실과 정부의 행사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직접 관련이 없다. 프랑스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가 원산국을 떠났을 때 보존관리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는 외규장각 자료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100년이 넘도록 파손도서 창고에 방치해 왔다.

둘째, 프랑스는 외규장각 자료를 1970년대까지 중국본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 자료가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1970년대였는데, 이때까지 파리 국립도서관은 한국본이 아니라 중국본 도서로 분류하고 있었다. 한국 출신 박병선 사서가 이 자료를 정리한 후에야 한국본으로 재분류하였다.<sup>29)</sup>

셋째, 2권 이상이 한 질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하나의 도서번호로 묶지도 않았

28) 이상찬, “파리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무엇이 문제인가?” **당대비평**, 2000년 12월호 참조.

29) 이태진, **왕조의 유산**(지식산업사 1994) 59-60쪽 참조.

고 인접한 일련 번호로 묶지도 않았다. 도서번호가 무질서하게 매겨져 있다.<sup>30)</sup>

넷째, 개장 시 표지, 제본 등을 훼손하였다. 파리 국립도서관은 1970년대에 외규장각 자료에 대해 대대적인 개장 작업을 했다고 한다. 문서철의 쪽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책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의뢰에 대해 원래의 비단 표지를 거둬내고 서양 비단으로 표지를 바꾸었다. 표제를 써서 따로 붙인 비단이 남아있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sup>31)</sup>

다섯째, “가철된 큰 책”(의뢰) 300책 중 1책이 1891년 대영박물관으로 팔려갔고<sup>32)</sup> 1책은 1970년대에 파리국립도서관으로 추가로 들어왔으며<sup>33)</sup>, 나머지 1책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파리 국립도서관측의 관리 소홀로 빚어진 사태이다.

프랑스는 전문보존인력과 과학적인 보존시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자국의 문화재나 서양 도서에 국한되는 것일 뿐이다. 외규장각 자료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우수한(?) 전문보존인력과 과학적인 보존시설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 이상으로부터 프랑스가 이 자료들의 기본 성격조차 파악할 능력이 없고, 자료 정리를 통해 목록을 작성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문 해독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 제목조차 정리할 수가 없고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장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알 수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문화 원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본적인 내용과 성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목록이 없이 보존관리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책장이 뒤바뀌어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 (2) 외규장각의 원상 회복

1866년 프랑스 해군이 불태워버린 강화도의 외규장각의 자료 소장 상황을 사실에 가장 가깝게 알려 주고 있는 자료가 丁巳外奎章閣形止案<sup>34)</sup>이다. 이에 의하

30) 박병선, **朝鮮朝의 儀軌**(19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쪽.

31) 개장 시의 원형 훼손에 대해서는 **朝鮮朝의 儀軌와 파리국립도서관 외규장각 도서 조사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32) 이태진, **왕조의 유산**(지식산업사 1994) 76-79쪽 참조.

33) **파리국립도서관 외규장각 도서 조사연구** 9쪽.

34) 이 형지안은 규장각(奎 9165의 2)과 파리 국립도서관(Coëen 2571) 두 곳에 다 소장되어 있다.

면 1857년 외규장각은 1) 왕족 신분 표지물 25점, 2) 어제 어필 68점, 3) 그림 족자류 6점, 4) 의궤 401종 667책, 5) 도서 606종 4,400여 책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프랑스 해군이 약탈해간 도서 340여권, 지도 2점, 족자 7개, 대리석판(옥책) 3개 등을 제외하면 1857년 소장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왕족 신분표지물 19점, 어제 어필 61점, 족자류 4점, 의궤도서 373책, 의궤 이외 도서 4,338책이 프랑스 해군의 방화로 불태워졌다고 한다.<sup>35)</sup> 약탈해 간 자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불태워져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36)</sup>

전시 문화재 파괴, 훼손, 불법 반출(약탈)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방화 사실은 프랑스 해군의 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된 셈이다.<sup>37)</sup> 문화재에 대한 전시 파괴, 훼손 행위에 대해 프랑스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외규장각의 원래 소장 상황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불타 없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고, 약탈해 간 자료는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외규장각에는 의궤를 비롯한 도서류 5,067책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궤 이외에 어떤 자료를 더 약탈해 갔는지를 조사하고, 알려진 자료 이외의 자료가 밝혀질 경우 이 자료까지 반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람용과 비어람용, 유일본 비유일본 등으로 나누어 교류를 하겠다는 생각이 핵심에서 얼마나 비껴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외규장각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면 프랑스는 자국민 선교사의 처형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다. 당시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를 처형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과정에서 외규장각 도서를 불태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전시 문화재의 파괴, 훼손, 불법반출의 위법성이

35) 이태진, “외규장각 도서의 유래와 1866년 프랑스 해군에 의한 방화 약탈 직전의 소장 상태” **奎章閣 25집**(2002년 12월).

36) 외규장각의 1866년 실제 소장 자료는 1857년의 형지안 기록보다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파리 소재 외규장각 자료 목록 중 8건(26책)이 1857년의 형지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43, 2책)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1843, 4책)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1843, 2책) **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1846, 2책) **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1846, 7책) **憲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1849, 3책)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1849, 2책) **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1849, 4책) 등으로 1843년 이후의 의궤이다. 1857년 이후 외규장각에 봉안된 자료가 더 있었다는 사실, 1866년 프랑스 해군이 불태워버린 의궤가 399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7) **외규장각 도서, 무엇이 문제인가?** 10-12, 19-24쪽 참조.

전쟁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을 어느 쪽에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를 파괴, 훼손, 불법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자국인 선교사의 처형을 배상받겠다고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외규장각의 원상 회복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협상을 시작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협상해야 할 세 가지의 현안이 생기게 된다. ① 프랑스 해군에 의해 불태워진 외규장각 자료에 대해 배상을 받아내는 일, ② 프랑스 해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자료를 외규장각의 원상 회복 차원에서 반환 받는 일, ③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처형된 프랑스인 선교사에 대한 조사와 배상 등이 그것이다.

또한 파리 소재 외규장각 자료를 130년 넘게 프랑스가 소장하고 있었고, 그동안 한국측에서 반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다. 한상진 대표를 비롯해 한국인들조차도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듯하다.<sup>38)</sup>

그러나, 1866년 당시 조선 정부는 외규장각에 보관 중이던 도서들이 모두다 불타버린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 프랑스 해군이 불을 지르지 않고 약탈만 해갔더라도 당연히 프랑스가 가져간 것을 알았을 터이지만, 수천 책이 불타버린 상황에서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외규장각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프랑스 측이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 프랑스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방치하였다. 1970년대에야 비로소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소장 상황이 소상하게 밝혀진 1985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1991년에 반환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프랑스가 외규장각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알고 나서 130년이 지난 것은 아니다.

### (3) 교류에 의한 영구 임대 방식의 반환

파리 외규장각 자료들이 ‘간행 도서’가 아니라 정부 문서류로서 정부 문서는 생산국의 영원한 소유라는 것, 1866년 프랑스 해군이 외규장각 자료에 대해 방

38) 이 문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消滅時效와 默認의 法理’의 측면에서 **외규장각 도서, 무엇이 문제인가?** 39-40쪽에 정리되어 있다.

화, 약탈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외규장각의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파리 소재 외규장각 자료는 무조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테랑 대통령도 인정했듯이(‘강제로 타국에 옮겨진 것’, ‘군사적 방법으로 가져갔지만’) 프랑스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로서는 혹시라도 원래 소유국으로의 문화재 반환이 붓물을 이루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외규장각 자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찾아낸 것이 ‘영구 임대’ 방식이었다. 외규장각 자료가 원래 우리의 소유이지만, 프랑스의 입장을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외형상 프랑스의 소유인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반환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영구 임대 방식은 이미 1993년 9월에 한불 양측이 합의를 하였다.

당시 ‘영구임대’는 프랑스의 자존심을 고려하고 다른 외국 문화재의 반환 문제로 파급될 곤경을 고려하여, 우리측이 제시하였고 그것을 미테랑이 받아들여 1993년 9월 14일 청와대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던 것이다.

남는 것은 “교류”에 대한 해석이다. 교류가 의제끼리의 맞교환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의제끼리의 맞교환이라면 영구임대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교류에 의한 영구임대”라는 복잡한 표현을 쓸 필요도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없다. 영구임대의 방식으로 외규장각 자료의 반환을 먼저 마무리한 다음, 프랑스에 대한 우호의 표시로서 무엇인가를 주어서 프랑스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좀더 설득력이 있다. 반환되는 도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반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영인간행된 한국학 자료의 교환, 문화 교류, 문화협력 역시 “교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 맺음말

1991년 프랑스에 대해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 첫째,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와 반환의 당위성을 공론화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둘째, 프랑스로 하여금 전시 불법행위(방화와 약탈)를 인정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구하게 되었다. 반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영구임대 방식에 합의하였고, 교환 대상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고도서가 아닌 다른 문화재, 제 3국의 문화재와의 교환도 가능하다는 데까지 후퇴시키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제국주의 국가, 강대국과의 외교 교섭에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은 식민 지배를 경험한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999년 새로 임명된 협상 대표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진전과 협상의 성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2000년 10월과 2001년 7월 두 차례의 협상에서 의케끼리의 맞교환 방안에 합의해 주었다. 파리에 있는 외규장각 자료를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들여오는 것이 협상의 성과라고 잘못 판단하고, 프랑스측 주장에 끌려다닌 결과였다.

의케끼리의 맞교환 방안에 합의는 했지만 그 방안은 실제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존의 목록조차도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은 엉터리 방안으로서 어람용 유일본의 교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유일본의 정확한 책수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한국측으로부터 교환될 비어람용 의케를 어느 것으로 해야 할 지 확정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한국에 한 권만 남은 비어람용 의케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여 파리에 있는 외규장각 자료 76책에 대해서는 교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비어람용 의케 5책과 의케가 아닌 3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또한 297책 이외에도 도서 43책, 지도 2점, 족자 7개, 옥책 3개 등 약탈당한 자료가 더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하고 이들을 반환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협상 대표가 고도서 전문가가 아니고 국제법 전문가도 아니며 외교교섭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반환 협상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협상은 하루빨리 중단하고 반환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외규장각 자료 반환 협상에서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할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규장각 자료는 생산국의 영원한 소유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 정부문서철이다. 둘째, 1866년 프랑스 해군은 전시에 조선의 문화재에 대해 방화(파괴)와 약탈을 자행하였고,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셋째, 프랑스는 1866년 외규장각 소장 상황을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고, 외규장각 자료는 무조건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영구임대 방식에 양국이 합의한 이상 이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이상의 원칙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남

는 문제는 영구임대의 방식으로 반환을 마무리한 후 어떤 방식으로 교류를 추진할 것인지, “교류”의 내용을 양국이 합의하는 일이다.

다만 외규장각 자료 반환과 관련하여 1860년대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을 프랑스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프랑스 선교사 처형 문제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1.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한 의견서 제출(규장각, 1996. 10)

1866년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환수와 관련하여 외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소장 복본 고도서와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상호 교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1. 위 외무부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

1)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는 병인양요(1866년) 때 불법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로서 반환의 대상이지, 한국이 프랑스에 대가를 주고 대등하게 교환할 대상은 아니다.

2) 한·불 양국간 고도서의 직접 교환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합법적인 근거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오히려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프랑스측의 현재 소유상태를 합법적인 것으로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고도서를 프랑스측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유출 문화재의 정당한 반환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끼리의 교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한국의 문화재를 무상으로 프랑스측에 또다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측에서는 외규장각 도서와의 교환조건이라는 명분으로는 단 한 권의 고도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2.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타당성

1) 프랑스측이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해야 할 국제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은 외규장각 소장 의궤류 6천여 책을 불태웠고 350여 책을 무단반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시 문화재에 대한 약탈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구성한다.

2) 1993년 9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하였을 때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약속하였고 그 실천의 상징으로 의궤 1권을 이미 반환하였다. 한·불 양국의 국가적 신의와 우호적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한 대로 나머지 도서 296책의 전량 반환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3) 자료의 활용 가치로 보아 외규장각 도서는 우리측이 소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외규장각 도서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전혀 연구



에 이용되지 않았다. 자료의 이용 빈도가 높고 고도서 자료의 보존시설이 잘 구비된 한국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 3.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방안 모색

1) 우선적으로 외규장각 도서는 독자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그런 후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의 한국측 지원은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반환의 경우, 프랑스의 체면과 명분을 살려주어 한·불간의 우호적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규장각 도서를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구 임대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3) 반환 후 호의에 대한 감사 표시와 우호증진 방안으로서 행해지는 문화 교류 또는 협력 방안으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모색될 수 있다.

① 프랑스의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 예를 들어 프랑스의 동양학 연구기관인 ‘국립 극동 연구원’ 한국지부의 건축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또는 프랑스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②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자료를 영인 간행한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日省錄』, 奎章閣資料叢書 등 학술적 가치가 있는 영인본 한국학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③ 문화 교류 및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 절차로서 학계, 문화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4) 양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형태로 발전한 본 현안을 단시일 내에 타결하려는 성급한 행정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인내와 노력으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2. &lt;외규장각도서 문제&gt;에 관한 韓佛 정상회담 보도자료

-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0월 19일 韓佛 정상 회담을 통하여, 외규장각도서 문제에 관하여 지난 1년 6개월 동안 韓佛 협상 대표간 협의를 통해 금번 구두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본 문제의 진전으로 평가하고, 양국 협상대표가 합의한 대로 2001년 말까지 문제를 완결할 수 있도록 협상대표의 조속한 제4차 협상을 촉구하였음.
- 양국 협상대표인 자크 살루아(Jacques Sallois) 프랑스 감사원 최고위원 (Conseiller - Maître)과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보관 중인 외규장각도서 문제에 관하여 지난 7월 서울에서 제3차 협상을 가진 바 있으며, 그때의 구두 합의 내용을 최근 프랑스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의견교환이 가능해 졌음.
- 조선시대 의궤(儀軌)는 국왕, 왕비, 세자 등의 책봉, 왕실의 결혼, 능원 조성 및 이장 등 왕실과 국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준비 과정, 의식 절차 및 진행, 행사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등의 사실을 정리하여 기록한 왕실 의례집으로 대체로 4부 정도를 작성하여 외규장각과 사고(史庫) 등에 분산 보관하였음.
- 조선시대 의궤는 국왕이 친히 열람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어람용》(御覽用)과 일반 보관용으로 제작된 《비(非)어람용》으로 나뉠 수 있음. 《어람용》 의궤는 서체, 그림, 종이의 질, 장정(裝幀) 등에 있어 《비어람용》 의궤보다 월등히 가치가 높음.
-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협상대상 의궤는 모두 297책으로 몇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람용》 의궤로 알려져 있음. 그 가운데 국내에 복본(復本)이 없는 《유일본》 의궤와 국내에 복본이 있는 《비(非)유일본》 의궤가 있음. 현재까지 우리측 연구 결과로는 《유일본》은 64책이며 《비유일본》은 233책임.
- 韓佛 협상대표 사이의 합의의 핵심은 프랑스측이 그동안 교류대상에서 제외했던 《어람용 유일본》을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는 데 있음. 한국측이 《유일본》과 맞교류하려는 것은 프랑스에는 없으나 국내에는 여러 권의 복본이 존재하는, 같은 시기(1630-1856)에 나온 《비어람용》 의궤들임. 우리측 연구 결과로는 교류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의궤는 228책임.

- 10·19 韓佛 정상회담으로 인해, 세계에 단 한 권씩밖에 남지 않은 《유일본》을 포함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어람용》 의궤들이 2001년 안에 국내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됨. 297책 가운데 한국측은 《유일본》 교류를 먼저 완결하고자 함.
- 故 프랑수아 미테랑 前 프랑스 대통령이 1993년 9월 訪韓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어람용》 의궤 한 권(『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徽慶園園所都監儀軌 上)은 유일본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2권, 총 6권의 복본이 존재하는 《비유일본》이었음.
- 《유일본》은 아니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어람용》 의궤도 국내에 있는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궤와 2001년 말까지 맞교류할 것임.
- 이런 합의는 1993년 9월 미테랑 前 프랑스 대통령의 訪韓 時, 양국 정상이 동의했던 <상호교류와 대여>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프랑스측은 《유일본》을 포함하여 《어람용》 의궤를 모두 한국에 돌려주고, 한국측은 민족 전통문화의 선양과 해외연구를 지원한다는 뜻에서, 여러 권의 복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비어람용》 의궤를 프랑스에 대여하려는 것임.
- 프랑스 소장 《어람용》 의궤들이 돌아오면, 역사학, 서지학, 전통의례 연구 분야의 연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전시 등에 있어서도 그 활용도가 클 것으로 생각됨.
- 양국 협상대표는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시행방식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6일부터 파리에서 제 4차 협상을 시작할 것임.
- 아울러 韓佛 학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동역사연구로 진실을 밝히고 韓佛 국민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2000년 10월 19일

한국측 협상대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한 상 진

### 자료 3. 외규장각도서 맞교환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며

1993년 9월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외규장각도서 반환을 약속했을 때 한국은 말 그대로 흥분의 도가니였다. 19세기 중반 이래 수많은 외압과 압제에 시달렸던 민족이기 때문에 빼앗긴 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회는 특별하였다. 그것은 마치 불법 부당한 피해의 역사가 처음으로 바로 잡아지는 순간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프랑스측의 태도 돌변으로 한 순간에 무너지고 배신감과 냉소가 그를 대신했다.

그후 7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난 10월 19일, 한불 양국 대통령 간의 합의라고 발표된 협상 내용에 접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합의 내용이 우리 것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 것을 다시 내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런 형태의 협상이 방치될 때 발생할 민족적 오욕과 악영향을 묵인하기 어려워, 우리의 소견을 내외에 천명하여 잘못이 바로 잡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측 협상대표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의 이름으로 배포된 「‘외규장각도서 문제’에 관한 韓佛 정상회담 보도자료」에 의하면, 합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프랑스에 있는 유일본 어람용 64책과 국내에 있는 여러 권의 복본이 존재하는, 같은 시기(1630-1856)에 나온 비어람용 의궤들”을 “2001년 안에 국내로 돌아오게 하고”, “유일본은 아니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어람용 의궤들도 국내에 있는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궤와 2001년까지 맞교류”된다고. 이 내용은 곧 미테랑대통령 방한 후 프랑스 실무진이 내놓아 협상을 난관에 빠트린 이른바 등가등량의 교환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그간의 협상의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문화재 반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조건 반환, 영구임대, 맞교환 등. 첫째와 둘째는 약탈문화재의 원상 회복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첫째가 원칙이 되, 둘째는 되돌리는 측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소유권이 그대로 반환국에 있는 형식을 빌리면서 사실상 반환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서로 상대방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탈 문화재가 이 형식을 취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외규장각도서는 대부분 왕실 의전행사에 관한 기록류로서 생산 때부터 국가소유로서 소유권이 변동될 수 없는 물품이다. 그리고 이의 반출도 프랑스 해군의 명백한 약탈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의 반

환 교섭이 첫째 또는 둘째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이번 합의의 내용은 셋째 형식을 취하여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측은 피탈 도서들이 이미 프랑스 국가 재산으로 등록된 것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이번의 맞교환 합의란 것은 곧 그 ‘프랑스 물건’과 우리 것을 교환하는 구도이다. 우리가 듣기로는, 지난 수년간 양국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바로 반환의 유형 맞추기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때문이었다고 한다. 협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스측의 주장의 부당성을 노출시켜 방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가동된 현 협상대표체제에서 그런 노력이 더 계속되지 못하고 프랑스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문서화되어 강행될 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마지 않는다.

첫째,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이 합의는 프랑스의 약탈행위를 합법화해주고 그들의 소유권도 뒤늦게 인정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하다. 이는 문화재를 빼앗긴 역사보다도 더 큰 민족적 오욕과 수치를 수반할 것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이런 형태의 맞교환은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문화재 반환 협상에 나쁜 선례로 작용하여 민족적 과제인 문화재 반환운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셋째, 국내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어람용 의궤는 그것대로 특별한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대량 해외 반출은 민족문화 연구에도 심대한 타격을 끼칠 것이다. 비어람용의 판화식 그림기법은 어람용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내외의 전문가들의 특별한 시선을 끌고 있다.

넷째, 현행 문화재법의 위반 사태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현행법은 비등록문화재라도 전시(展示) 목적으로만 2년간의 출국이 허용되며 꼭 필요할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합의가 지시하는 의궤의 장기 대여는 이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곧 이번 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협상을 일시 중단하여 협상 대책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그에 반영되기를 요망한다.

첫째, 우리가 외교상 양보할 수 있는 하한선이 영구임대 방식인 것을 잊지 말

기 바란다. 외규장각도서 반환 요청은 병인양요(1866) 당시 프랑스 해군 지휘관 (로즈제독)이 본국 해군성 장관에게 약탈과 방화를 전과로 보고하는 편지를 발견하여 이에 근거해 약탈문화재 반환의 형식으로 제기된 것으로, 이 취지가 망각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프랑스측 설득에 한계가 있어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때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프랑스측은 장기간에 걸친 점유 사실을 토대로 취득시효 또는 피탈국의 묵인의 법리에 의존하는 경향을 농후하게 보이고 있다. 문제의 도서가 이미 프랑스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약탈 방화 당시의 소장품관리 장부(「정사외규장각형지안」)에 대한 조사로, 그들의 방화행위로 잿더미가 된 서책과 물건들의 이름이 모두 확인된 이상, 오히려 우리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방화로 잿더미가 된 4,300여 책 가운데 유일본이 730여 책(의뢰 유일본 136종 235책)이나 되는 큰 문화적 손실이 있었던 것을 저들에게 주지시킬 필요도 있다.

셋째, 1866년의 약탈 방화사건은 여러 부면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협상 대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협상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도 요청해마지 않는다.

넷째, 약탈문화재의 무조건 또는 영구임대 형식의 반환 사례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 주기 바란다. 전시 약탈 문화재의 기원국 반환 국가관행은 1815년 베엔나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867년 영국이 이티오피아 무력 침공시 약탈한 문화재가 4차례에 걸쳐 반환되었고, 1900년 중국 의화단 사건 때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베이징 관상대의 천문의기들을 가져갔다가 국제적 비난에 못 이겨 프랑스는 1902년, 독일은 1921년에 각각 제자리에 갖다놓은 사실 등 적지 않은 사례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유네스코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민족주의적 가치관도 우리는 심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1993년 미테랑 대통령이 한 권의 의뢰를 반환했을 때, 그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의 보존기술의 우수성을 찬양하고 심지어 프랑스에서의 지속적인 보관을 찬성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보존상태가 좋았던 것은 우리의 어람용 의뢰가 쉽게 변색하지 않는 특수지(초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프랑스의 관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피탈 의뢰 300책 중 3책이 분실된 현황은 결코 프랑스측의 관리를 양

호하다고 평가할 수 없게 하며, 분실 3책 중 1책이 영국에 팔려간 것은 이미 별도로 확인되었다. 프랑스측의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현장 조사권을 요구하여 더 추궁해 볼 여지가 있으며, 현재 반환대상에서 누락된 의궤 외 도서 40여 점에 대한 처리 기준도 이런 조사활동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외규장각도서 반환 협상은 약탈문화재 반환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미테랑 전 대통령이 만약 이번 합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반환을 약속했다면, 우리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의 양식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의 발언에는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적어도 이런 맞교환 형식을 상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 양국은 바로 이 점을 협상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 협상다운 협상을 추진할 때 이 건으로 인한 양국 우호관계의 손상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벽두에 양국간에 바른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2000년 11월 3일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최완기  
 조선시대사학회 회장 이병휴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권영필  
 한국산업기술사학회 회장 남문현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방기중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노명준

역사학회 회장 김용덕  
 진단학회 회장 홍승기  
 한국사연구회 회장 최병헌  
 한국18세기학회 회장 이태진  
 (이상 가나다순)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영설

## 참고자료 4. 한상진, 자끄 살루아 협상 대표 공동합의문

(2001년 7월 25일 파리)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프랑스 대통령이 1999년 각각 협상대표로 임명한 韓相震 한국 대통령자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자끄 살루아(Jaques SALLOIS) 프랑스 감사원 최고위원은 2001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파리 소재 프랑스 한림원(Institut de France)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협상대표는 1993년 한불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상호대여’의 방안에 더욱 공감하여 외규장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상호협력을 다짐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자끄 시락 대통령간의 2000년 10월 서울 정상회담의 친선정신을 존중하고, 이미 3차례 진행된 협상대표간 협의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각각 자국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1. 프랑스는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어람용 의궤를 상호대여의 틀에 따라 한국에 여러 권의 복본이 있는 비어람용 의궤와 상호대여한다.
2. 한국에 복본이 없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유일본은, 같은 시기(1630-1857)에 제작된 것으로서, 프랑스에는 없으나 한국에는 여러 권의 복본이 있는 비어람용 의궤와 상호대여한다.
3.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은 한국에 복본이 없는 프랑스 소장 유일본 의궤부터 시작한다.
4. 소수 한국전문가와 학자 일행은 2001년 9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여 프랑스측 전문사서들과 협력을 시작할 것이며, 한불 양측에게 편리하고 필요한 기간만큼 외규장각 도서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다. 실사에 앞서 한상진 대표는 살루아 대표에게 외규장각 도서 유일본에 관한 한국측의 잠정적 목록을 제시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실사는 유일본부터 먼저 시작할 것이다.
5. 실사가 완료된 후, 한국측은 프랑스측에 대여할 도서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프랑스 전문가 팀의 실사가 뒤따른다.
6. 상기 준비작업에 기초하고, 전문가와 사서를 포함한 양측간의 폭넓은 협의를 거쳐 일괄적이고 동시적인 상호대여를 시행한다.
7. 위에 언급된 한국측 실사와는 별도로, 외규장각 도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



는 한국학자들은 사전에 열람을 신청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수용능력이 허용하는 한 외규장각 도서를 열람한다.

1999년 10월 공동합의문에서 프랑스측이 의향을 밝혔듯이, 살루아 대표는 금번 회의에 앞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 297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한상진 대표에게 2001년 7월 13일 제공하였다. 한상진 대표는 이러한 노력에 감사하면서, 제공된 정보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가했다.

제 5차 회의는 양측의 추후 협의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상진

자끄 살루아

<Abstract>

## The Negotiations to Retrieve the Wae-Kyujanggak Manuscripts Currently in Custody of the Paris National Library; What are the Flaws and Problems?

Sang-Chan Rhee\*

Ever since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ad filed an official request of the return of the Wae-Kyujanggak materials currently located in France in 1991, the Korean public's interest in their own cultural artifacts and properties currently in the hands of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other nations, etc.) has considerably increased. And as a result, a general consensus demanding the return of such materials was established.

The negotiations with the French representatives to retrieve the Wae-Kyujanggak materials had initially brought us some positive results. An agreement was reached regarding the procedure of 'permanently renting' the materials and thus opening a new chapter of cultural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rance regressed from its initial position requiring from Korea only age-old book materials for the trade, and newly agreed to receive other forms of cultural artifacts or even cultural artifacts of an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etc.) instead.

Yet Mr. Han Sang Jin, the head representative of the new negotiation team dispatched in 1999, and also oddly unaware of the achievements of previous negotiations, conducted negotiations twice in October 2000 and July 2001 in which he agreed with the French representatives on terms of trading materials in exactly equal nature. That is to say, a new agreement, dictating that Royal

---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tocol manuscripts should be traded only with other Royal protocol manuscripts, was made. This was a truly devastating result which was due to the negotiation team's short-sighted intent solely to retrieve the manuscripts in France, and their naivete that led them play into France's intentions instead of seeing the bigger picture.

Simply speaking, the agreement was an impossible one to carry out in the first place. Manuscripts located in France, which were originally meant for Royal inspection and only had single versions of them extant, were the ones which the negotiation team most actively sought to retrieve, yet no efforts were made to survey the exact number of remaining materials. In the meanwhile, objects to be delivered at the cost of those retrieved materials were manuscripts which were not meant for the Royal inspection, so in nature there is no practical way to secure such materials fully successfully. And other than these difficulties, other important issues also newly suggested themselves. First, the return of total of 84 volumes in the entire 297 volumes in France were declared unnegotiable by the French government. And secondly, 43 volumes of other book materials, 2 map pieces, 7 scroll materials and 3 marble tablets were also not included in the negotiation table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negotiation team.

Apparently Mr. Han Sang Jin is not an expert in International laws or diplomatic negotiations, and certainly not an expert in age-old book materials either. So he was simply not in any position to lead the negotiations. These inappropriate negotiations should be halted, and talks for retrieving the materials should commence on a completely new ground.

The basic positions that we should maintain in the upcoming negotiations are as follow: First, the Wae-Kyujanggak materials are governmental properties of the country which produced them in the first place, and in no conditions that the ownership of those materials can be formally altered. Second, in 1866 the French navy deliberately burned and pillaged the cultural properties of the Chosun dynasty during their plundering, therefore committing an act of grand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s. They should answer to the implications. Third, under the circumstances France should completely restore the previous status of

the Wae-Kyujanggak materials, and should return the materials to the Korean people at once. But considering there had been an agreement made earlier dictating that the materials should be returned to the Korean people via a procedure of 'permanent lease(renting)', this agreement should be honored.

These basic principles should be maintained as firmly as possible. The only remaining problem is how we would proceed to open a new chapter of cultural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France after the permanent lease(renting) of manuscripts are completed, and how we would agree on the nature and contents of such relationship.

The French government might try to relate the matter at hand with the issue of the Chosun government's execution of French missionaries during the 1860s, but we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at sort of inappropriate propositions as well.